

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·외 도시간
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2. 2. 11.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·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451호로 2022년 1월 2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- 가. 국·내외 도시와의 협력관계를 ‘자매’와 같이 통상적 혈연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변하고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으며
- 나. 특정성별을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성차별적 우열관계를 나타내는 뜻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, 상호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객관적·중립적 용어로 규정하고자 제명을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‘자매결연’을 ‘친선결연’으로 개정(제명, 안 제1조~ 제8조, 제10조~제11조)
- 나. ‘자매도시’를 ‘친선도시’로 개정(안 제9조,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입법예고(2021. 11. 18. ~ 12. 8.) 결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열적 관계를 나타내는 “자매” 용어를 상호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“친선”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임.

※ 자매(姊妹): 여자끼리의 동기, 즉 순위 누이인 언니와 손아래 누이인 아우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명을 포함하여 안 제1조~제8조, 제10조~제11조에서 “자매결연”을 “친선결연”으로 변경하고
- 안 제9조, 제11조에서 “자매도시”를 “친선도시”로 변경하였음.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(2022년 1월 13일 시행) 제39조는 “자매결연”을 “친선결연”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,

“자매도시” 용어 관련, 인권위원회 권고안의 근거가 된 한국법제연구원 「차별적·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」(2015.10.)에서는 도농교류를 자매결연으로 표현하는 것이 도시와 농촌을 상호 우열적 관계로 지칭하는 차별적 용어로 보고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.

○ “자매결연”은 국외도시와 교류 시 공통관심사에 긴밀히 소통하고 행정·경제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

도모하기 위한 교류협력 약속을 의미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국제화 수단이자 보편화된 국제교류 활동이라 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○ 검토결과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호 우열적 관계를 지칭하는 차별적인 용어인 “자매”를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용어인 “친선”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9조(교류협력의 범위)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·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·개최 등으로 한다.